

# 공금종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공금종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m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 한 달 소득 중 모든 개인 지출 후 남은 금액으로 검토

개인사업자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 방법은

문: 회계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법인세 보고서가 별도로 준비되지 않는다.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이세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영주권 승인에 있어 중요한 조건 중 한 가지는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직책에 정해지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상태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직원이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현재 지급되고 임금은 영주권 적

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에 측정된 임금이 연 4만불이고,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 임금이 4만 5천불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주권의 적정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고용주는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재정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3만9000불인 경우, 영주권 적정임금보다 1000불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 1000불이라는 금액이 고용주의 재정 능력으로 총당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 적정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이가 고용주의 세금보고서에서 여유자금으로 보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직원이 스폰서 업체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 적정임금으로 측정된 전액은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다고 입증

되어야 한다. 즉,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서상 발생한 순이익이나 유동 자산의 금액이 적정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한 후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많다고 해도 이 금액만으로는 영주권 임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법인의 형태가 아닌 고용주, 즉 개인 사업자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 운영을 하고 남은 순이익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 소유주가 분리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우선 개인 사업자의 개인 소득이 되고, 이 개인소득 중 한 달에 필요한 모든 개인지출을 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영주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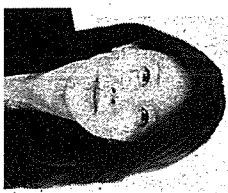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 상 필요한 자금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자산은 적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재정과 회사의 재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이어야 하며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연금 등은 유동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신탁 재산 등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 개인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매달 발급된 고지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개인 통장 지출내역 등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시가를 보여줄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 공금종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공금종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개인사업자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 방법은

## 한 달 소득 중 모든 개인 지출 후 남은 금액으로 검토

문: 회계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려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법인세 보고서가 별도로 준비되지 않는다.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이세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출수 있는 재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영주권 승인에 있어 중요한 조건 중 한 가지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직책에 정해지는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상태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직원이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현재 지급되고 임금은 영주권 적

정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에 측정된 임금이 연 4만불이고,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 임금이 4만 5천불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주권의 적정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고용주는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재정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3만9000불인 경우, 영주권 적정임금보다 1000불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 1000불이라는 금액이 고용주의 재정 능력으로 총당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 적정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이 고용주의 세금보고서에 사유자금으로 보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직원이 스폰서 업체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 적정임금으로 측정된 전액은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다고 입증

되어야 한다. 즉,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서상 발생한 순이익이나 유동 자산의 금액이 적정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한 후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임금보다 많다고 해도 이 금액만으로는 영주권 임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법인의 형태가 아닌 고용주, 즉 개인 사업자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 운영을 하고 남은 순이익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 소유주가 분리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우선 개인 사업자의 개인 소득이 되고, 이 개인소득 중 한 달에 필요한 모든 개인지출을 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영주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 상 필요한 자금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자산은 적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재정과 회사의 재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이어야 하며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연금 등은 유동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신탁 재산 등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 개인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매달 발급된 고지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개인 통장 지출내역 등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상세히 제출되어야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